

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

제정 1992. 12. 19 규칙 제 485호
개정 2008. 6. 16 규칙 제 93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)
일부개정 2018. 7. 31 규칙 제1184호(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)
일부개정 2020. 3. 25 규칙 제1227호(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6. 16, 2020. 3. 25>

제2조(주요자산)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주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<개정 2018. 7. 31>

1. 토 지
2. 건축물
3. 구축물
4. 관거시설물
5. 기계 및 장치
6. 배수펌프장시설
7. 공구, 기구, 비품
8. 차량운반구
9. 준설기
10. 하수종말처리장

제3조(자문기관의 대행)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며,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.

제4조(준용) 법령 및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광명시 재무회계 규칙」 및 「광명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부칙

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규칙 제93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

제2조 생략

부칙 <2018. 7. 31 규칙 제1184호,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20. 3. 25 규칙 제1227호,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규칙
일괄정비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